

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9조의3 및 제39조6에 규정된 융합연계 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1.)
- 제2조(정의) ① 융합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학부)의 교과목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전공을 의미한다.(개정 2026. 3. 1.)
- ② 자기설계전공은 학생이 스스로 2개 이상의 학과(학부)의 교과목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구성하는 전공을 의미한다.
- 제3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융합연계전공

- 제4조(운영) ① 각 융합연계전공은 주관학과(학부)와 관련학과(학부)를 연계하여 운영하며 총괄 운영은 융합연계학부가 한다. 다만,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단과대학이 주체가 되는 융합연계전공은 해당 단과대학을 주관학과로 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 ② 각 융합연계전공에 주임교수를 두며, 융합연계학부장이 융합연계전공 주임교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 ③ 융합연계학부장은 각 융합연계전공 주임교수와 함께 주관학과(학부) 및 관련학과(학부)와 논의하여 해당 융합연계전공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운영 등의 중요한 사항은 융합과정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다만, 통합사회 융합연계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교육과에서 주관한다.(개정 2020. 6. 10., 2026. 3. 1.)
- ④ 융합연계전공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다만,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하여 융합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융합연계전공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편성 등에 따라 부전공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 제4조의2(신설) ① 융합연계전공은 교육혁신원 또는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학과(학부)가 관련학과(학부)의 동의를 받은 후, 소정의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융합연계학부 주관으로 사회적 수요 및 전망을 토대로 신설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융합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26. 3. 1.)
- 제4조의3(폐지) ① 융합연계전공 운영 중 최근 4개 학기 신규 신청자 수 합계가 20명 미만일 경우 폐지 대상으로 분류한다. 다만, 해당 전공 주임교수가 2개 학기 폐지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 신규 신청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유예 기간 종료 시 폐지한다.

② 폐지 결정 시, 해당 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정 운영은 유지한다.(본조 신설 2026. 3. 1.)

제5조(교과목 신설 및 편성) ① 융합연계전공 교과목은 각 전공별 주관학과(학부), 관련학과(학부) 및 창의융합학부에서 해당과목을 개설하는 영역 및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 운영한다.(개정 2023. 2. 22., 2026. 3. 1.)

② 신설되는 융합연계전공에 한하여 해당 전공의 고유 교과목을 최대 2개까지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학기는 학과(학부)의 연계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둘째 학기부터 고유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고유 교과목의 신설은 융합과정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부 사업 등으로 교과목 운영비가 지원되는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2개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해당 지원 기간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신설 2026. 3. 1.)

제6조(신청자격) ① 융합연계전공은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0. 6. 26., 2026. 3. 1.)

②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융합연계전공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학부) 재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26. 3. 1.)

③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소속 학생은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작곡과 2023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의 경우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5., 2024. 3. 1., 2025. 3. 1., 2026. 3. 1.)

④ 융합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 중인 자는 해당 전공 이수 완료 전까지 다른 융합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과(학부)의 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 중인 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⑤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융합연계전공은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신청 자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제7조(신청 및 선발) ① 융합연계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

② 융합연계전공의 이수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운영 형편 또는 특성화 사업 등의 사업 목적 및 범위 등에 따라 이수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제8조(변경 및 포기) 융합연계전공을 부전공에서 복수전공으로 또는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변경하거나 융합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에 변경 또는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

제9조(이수학점) ① 융합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따르되, 202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별도로 정하는 이수학점 기준을 따른다. 다만,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융합연계전공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르고,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융합연계전공의 세부 이수학점은 융합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2020. 6. 10., 2026. 3. 1.)

② 융합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한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은 15학점까지,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융합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한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은 9학점까지,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통합사회 융합연계전공과 융합디자인 융합연계전공, 문화내러티브 융합연계전공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6. 3. 1.)

③ 융합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제1전공학과(학부)와 융합연계전공의 과목 중복 인정은 9학점(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융합연계전공은 29학점)까지 할 수 있다. 중복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은 4학년 제2학기 소정 기간 내에 이수구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3. 1., 2026. 3. 1.)

④ 융합연계전공 이수 허가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융합연계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⑤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융합연계전공을 제1전공학과(학부)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개정 2026. 3. 1.)

⑥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신청 시 융합연계부전공 또는 융합연계복수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

제10조(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편입생이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편입 당해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정학점 내에서 전적대학 이수학점을 융합연계부전공 또는 융합연계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제11조(졸업논문) ① 융합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외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각 융합연계전공의 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②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융합연계전공은 융합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 기준을 졸업논문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0. 6. 10., 2026. 3. 1.)

제12조(수강지도)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융합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3. 1.)

제3장 자기설계전공

제13조(운영) 자기설계전공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제14조(신청자격) ① 자기설계전공 신청자격은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2024. 3. 1.)

②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소속 학생은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작곡과 2023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의 경우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5., 2024. 3. 1., 2025. 3. 1.)

③ 융합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 중인 자는 해당 전공 이수 완료 전까지 다른 융합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과(학부)의 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 중인 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④ 자기설계전공의 이수 승인은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다만, 신청 후 취소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 3. 1.)

제15조(신청 및 승인) ①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자기설계전공의 전공명, 교육목표, 학위명,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학생이 제출한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융합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전공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 6. 10.)

③ 융합과정위원회는 자기설계전공의 전공인정 심사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6. 10.)

제16조(포기)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

제17조(교과목 편성) ①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기존 개설과목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최소 2개 이상의 학과(학부)에서 개설된 교과목으로 총 70학점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양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6학점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융합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6. 3. 1.)

제18조(이수학점) ① 자기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의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따르되, 202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별도로 정하는 이수학점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6. 3. 1.)

② 제1전공학과(학부)와 자기설계전공의 과목 중복 인정은 9학점까지 할 수 있다. 중복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은 4학년 제2학기 소정 기간 내에 이수구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6. 3. 1.)

③ 자기설계전공 승인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자기설계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자기설계전공학점을 제1전공학과(학부)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

⑤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 신청 시 자기설계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

제19조(수강지도)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22조 삭제(개정 2020.06.10.)

제23조 삭제(개정 2020.06.1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연계전공 운영 시행세칙을 폐지한다.

제3조 (연계부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4조 제3항의 연계부전공, 제13조의 자기설계전공 운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9조 제1항, 제11조 제3항은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연계전공은 융합연계전공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